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192
------------	------

2024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혜지 의원 외 25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327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4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혜지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수가 차이가 커 대중교통 이용 편의의 상대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함

나. 주요골자

- 가. 시장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23. ~ 2024. 10. 2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1) 교통정책과-8231호('24.11.6.)

-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에 대한 접근성 보완을 위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분석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의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과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의 접근성 보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도시철도 11개 노선²⁾ 및 337개 역사, 시내버스 393개 노선 및 마을버스 252개 노선, 정류소 6,640개소³⁾를 운영중에 있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있음
- 서울연구원 보고서⁴⁾에 따르면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지역,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동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

2) 도시철도 운영현황(서울시, 시정통계 '24년 7월)

호선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	신림선	계
	1	2	3	4	5	6	7	8				
역수	10	50	34	26	56	39	42	18	38	13	11	337

3) 정류소 현황(서울시 자료, '24년 9월)

총 계		가 로 변		중 앙 차 로		환 승 센 터		스 마 트 쉘 터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6,640	4,522	6,234	3,515	375	939	18	33	13	35

4)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2021.11.1. 정책리포트 제333호) p3

이용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간 대중교통 접근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5)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시책 평가시 '대중교통시설에 의 접근성 제고'를 평가고려사항6)으로 반영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7)으로 도보 5분 이내의 대중교통 접근 체계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면목선 등 도시철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지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현황과약을 위해 접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도 및 지표 선정, 목표설정, 현황조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7) 제327회 정례회 교통실 업무보고 p37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9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혜지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춘선, 유만희,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종환, 장태용,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수가 차이가 커 대중교통 이용 편의의 상대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 및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접근성 보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시행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2. ~ 11.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중 합 분석 및 대중교통 접근성 취 약지역 접근성 보완</u></p> <p>2.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1항제1호의2에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1항제1호의2에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